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 음압격리병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
- □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 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 * 현재 43개소 지정(제2기, '15~'17년) (참고1)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 * 보건복지부령「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및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의 개정안 등











□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내용 >

◇ 기준 신설

신설 기준		주요 내용			
감염	①음압격리병실	'18.12.31일까지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성 수준(전실, 면적 15㎡ 이상) 음압격리병실 구비			
관리 능력	②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병문 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 3점)			
의료	③ 상급 - 非상급 간 정보협력체계 구축	상급-非상급(의원, 종합병원 등) 간 진료 · 검사 등을 위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전 달 체 계	④ 병상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	사전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제재조항 신설 (감점 5점)			
의료 색 <u>산</u> 질	⑤의료 서비스 질	고난이도 질환(심장, 뇌, 암 등)에 의료 서비스 질 평가 결과 반영 (배점 5%)			

◇ 기준 강화

저무지근지버그.		기존	개정안	
신문신표설명군* 진료 비중	최소기준	17%	21%	
다표 -10	만점기준	30%	35%	

^{*} 질병 난이도에 따라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됨

①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 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 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③ 환자의 진료ㆍ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 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고될 예정이다.
- 본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하여 **상급 非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④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으며, 본 절차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⑤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배점 5%)
- 이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 *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 :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⑥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여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 질병의 위중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분류
-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 그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하였다.
-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개정안은 2월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대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예정)
 - 이 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 개정안 전문은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의 '법령정보'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될 예정이다.

<참 고>

- 1. 상급종합병원제도 개요
- 2.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주요내용











참고1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요

- □ 兔
 - (개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 (지정효과) 건강보험수가에 가산혜택
 - **종별가산율** 30%(종합병원 25%, 병원 2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 * **입원료**, **진찰료**, 의약품관리료,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치과보철료 등
 - (목적) 중증질환자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인력·시설·장비 수준 및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환자배분

□ 현황

○ 3년 주기로 지정되며, 현재 **제2기('15~'17) 43개소** 지정(52개소 신청)

< 제2기 상급종합병원 목록 (43개소, '15~'17) >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 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 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 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남부권(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ネルコ(2)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			
충남권(3)	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거 ㅂ 기(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			
경북권(4)	교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경남권(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			
	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지정 방법

- (대상)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
- (방법) ①지정기준(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충족 + ②상대평가를 통해 진료권역별 적정 소요 병상에 맞게 지정
- (주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











참고2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요

□ 근/		
------	--	--

○「의료법」제3조의4 및 시행규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복지부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 주요 개정내용

○ 기본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탈락)

구 분	기존	개정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이상 ·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u>중앙</u> ,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 변동 없음		
인 력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 중환자실·신생이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기준 추가		
시 설	· 중환자실을 갖추고, 이에 따른 시설규격 준수	·음압격리병실 구비 추가 ·진료 등에 관한 정보 협력체계 구축 추가		
장 비	 CT, MRI, 혈관조영촬영기, 근전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각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변동 없음		
환자구성 비율	·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이하 ·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u>21%</u> 이상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의료서비스 질 평가 추가		











○ 상대평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에 따른 경쟁기준 : ()는 개정안)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8/18국		10점	9점	8점	7점	6점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 이상</u> 인 경우 10점 ⇒ <u>35% 이상</u>)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17% 인</u> 경우 6점 ⇒ <u>21%</u>)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17% 초과 30% 미만</u> 인 경우 ⇒ <u>21% 초과 35% 미만</u>)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u>XX.XX×0.3077)+0.7690</u> ⇒ <u>XX.XX×0.2857)+0.0005</u>)				
전문진료질병군	60%					
환자구성비율	<u>(⇒ 55%)</u>					
의사 1인당 연평균	20%	4.0명이하	5.5명이하	7.0명이하	8.5명이하	10명이하
1일 입원환자수			~4.0명초과	~5.5명초과	~7.0명초과	~8.5명초과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0%	1.9명이하	2.0명이하	2.1명이하	2.2명이하	2.3명이하
1일 입원환자수	, .		~1.9명초과	~2.0명초과	~2.1명초과	~2.2명초과
교육기능	10%	10개이상	9개	8개	7개	6개
의료 서비스 질	(50/)	5개 분류	· ·(심장질환,	 뇌질환, 암 ²	 질환, 예방직	 석 항생제를
평가	(<u>5%</u>)	사용하는 수술, 진료량) 평가에 따라 0~10점				

※ 가점 및 감점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 할 경우 : **가점 3점**
-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가점 2점
-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협의결과와 달리 증설한 허가** 병상이 있는 경우 : **감점 5점**



